감 사 보 고 서

본인은 「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8조(임원의 직무)제2항, 「용산복지재단 정관」 제19조(임원의 직무)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의 2020.1.1.부터 2020.12.31.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업무집행 내용, 수입과 지출에 관한 제반 증빙서류 및 장부에 대해 일반적인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제출합니다.

□ 감사 의견

- 2020회계연도 업무집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, 결산서의 각 항은 정확하였으며,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습니다.
- 재무제표는 일반적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1년 2월 10일

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감사 송정환 (인)

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감사 이해영 (인)

재단법인 용산복지재단 이사장 귀하